1. 자녀세액공제 요건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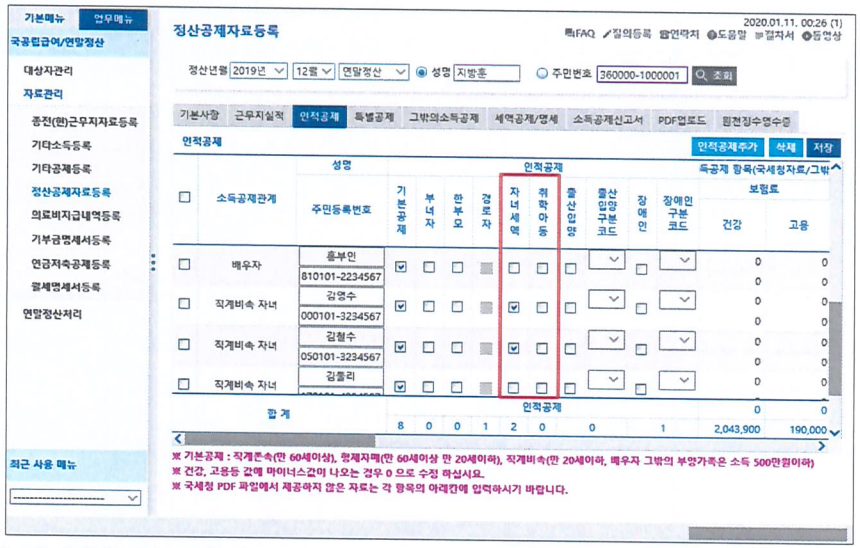

① 자녀세액공제 요건 개정 :

- (기존)20세이하인 자녀 → (개정)7세이상 20세이하인 자녀(7세미만 취학아동은 포함)

② 나이스 변경사항 :

- 등록된 자녀가 7세 미만인 경우 **자녀세액란**에 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. 혹 체크를 하더라도 자료 [저장] 시 체크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.
- 7세미만이지만 취학아동인 경우 **자녀세액란**과 **취학아동란** 모두에 체크를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.

2. 실손의료보험금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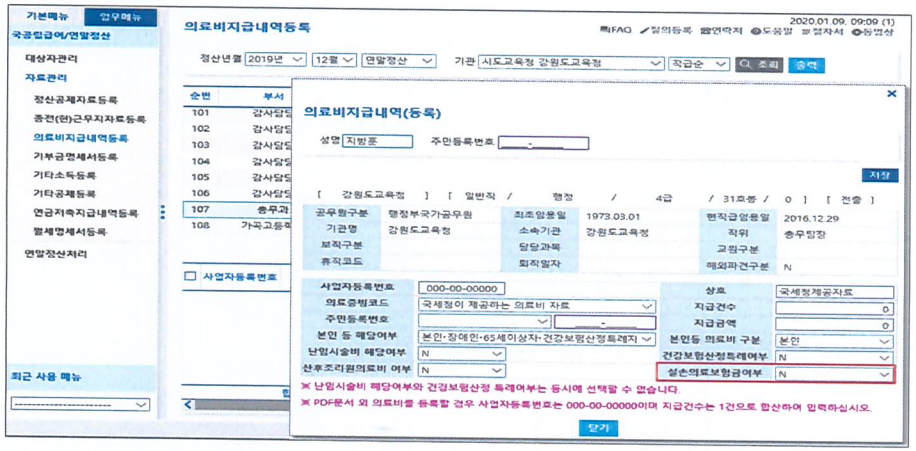

① 변경 사항 : 의료비 지출 시 보전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② 실손의료보험금은 [국세청 홈택스] - [My 홈택스] - [실손의료보험금 조회]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(부양가족 동의 시 부양가족 자료도 확인 가능)

③ 등록 방법 :

예시) 청구의료비 100만원, 실손의료보험금 40만원, 실제지출 60만원 인 경우

→ 나이스 상 의료비등록: 100만원, 실손의료보험금: 40만원 2건으로 등록합니다.

사업자등록번호	상호	의료증빙코드	지급건수	지급금액	주민등록번호	본인등 해당여부	의료비 상세구분	난임시술비 해당여부	산후조리원 의료비여부	실손의료 보험금여부
000-00-00000	XX 보험	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	1	400,000	530215-1111111	O	본인	N	N	Y
000-00-00000	00병원	진료비계산서, 약제비계산	1	1,000,000	530215-1111111	O	본인	N	N	N

③ 실손의료보험금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임의(000-00-00000)로 입력해야 하며, 여러 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(000-00-00001), (000-00-00002)와 같이 중복되지 않게 입력해야 합니다.

※ 의료증빙코드의 경우 [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] 코드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.

※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이 여러 건인 경우 총액을 더하여 한 건으로 등록 가능

-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도 여러 건인 경우 부양가족 별로 총액으로 한건씩 등록 가능

④ 부양가족은 **[본인등 해당여부]** 항목에 '그외 기본 공제대상자'를 선택하여 등록

사업자등록번호	000-00-00000	상호	국세청제공자료
의료증빙코드	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	지급건수	1
주민등록번호	아들 : 직계비속 자녀 / 991011-1032411	지급금액	1,000,000
본인 등 해당여부	그외 기본 공제대상자	본인등 의료비 구분	본인
난임시술비 해당여부	N	건강보험산정특례여부	N
산후조리원의료비 여부	N	실손의료보험금여부	Y